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16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김영선 · 김형동 · 조해진
정우택 · 조명희 · 이명수
성일종 · 이종성 · 한기호
태영호 · 이달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측·분석·모니터링·대비·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자연재해의 예측·분석·평가·모니터링 및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한국방재안전공단의 설립) ①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방재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2. 자연재해의 예측·분석·평가·모니터링
3.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분석
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 ⑧ (생 략)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 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 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 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 다. ⑩ (생 략) <u><신 설></u>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 ⑧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⑩ (현행과 같음) 제4조의3(한국방재안전공단의 설 립) ①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 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방재안 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을 둔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2. 자연재해의 예측·분석·평 가·모니터링

	<u>3.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 .</u> <u>분석</u> <u>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u> <u>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u> <u>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u> <u>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u> <u>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u> <u>을 준용한다.</u>
--	--